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791호
- 발 의 자 : 김경우 의원(찬성자 12명)
- 발의일자 : 2019년 7월 30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신체적·정신적인 불완전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보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 4조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신체적·정신적인 불완전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제약이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보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② (생 략) <u><신 설></u>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u> <u>1.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u> <u>2.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u> <u>3.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 서울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대관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2018년도 기준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개인사용 현황이 8.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운영 계획수립 필요성이 인정됨.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개인사용 현황(2018년)>

(단위: 명)

시설명		전체	취약계층 (a+b+c+d)	노인 (65세이상) (a)	장애인 (b)	가족수급자 (c)	국가유공자 (d)
잠실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579,658	34,600 (6.0%)	27,248 (4.7%)	4,111 (0.7%)	88 (0.01%)	3,153 (0.5%)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투어)	19,751	11,194 (56.7%)	개별 집계 불가	개별 집계 불가	개별 집계 불가	개별 집계 불가
서남권 돛구장	야구장(투어)	408	16 (3.9%)	1 (0.2%)	15 (3.7%)	-	-
	수영장	25,238	3,752 (14.9%)	2,547 (10.1%)	672 (2.7%)	18 (0.1%)	515 (2.0%)
	체력단련장	6,565	1,088 (16.6%)	434 (6.6%)	379 (5.8%)	13 (0.2%)	262 (4.0%)
목동 운동장	실내빙상장	218,945	1,524 (0.7%)	587 (0.3%)	637 (0.3%)	300 (0.1%)	-
효창 운동장	축구장	104,174	22,784 (21.8%)	21,884 (20.9%)	900 (0.9%)	-	-
창동문화 체육센터	수영장	21,511	3,532 (16.4%)	365 (1.7%)	1,994 (9.3%)	221 (1.0%)	952 (4.4%)
	체력단련장	6,663	3,888 (58.4%)	2,769 (41.6%)	662 (10.0%)	99 (4.2%)	358 (5.4%)
	실내체육관	4,292	805 (18.8%)	593 (13.8%)	82 (1.9%)	28 (0.7%)	102 (2.4%)
합계		987,205	83,183 (8.4%)				

- 장애인의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해 665억원 편성하였으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300억원 편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센터를 '25년까지 150개소 신규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록 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주요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 %)

구 분	'18년 예산(본예산)	'19년 정부안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예산액(B)	증감액(B-A)	비율
합 계	27,306	66,910	39,604	145%
생활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	0	30,000	30,000	신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0	2,650	2,650	신규
생활체육 용품 및 차량 지원	900	1,853	953	105%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및 클럽 지원	1,740	2,760	1,020	58.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역량강화	7,859	10,955	3,096	39.4%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	1,006	1,522	516	51.3%
기타 (장애인국민체육인증센터 등)	15,801	17,170	1,369	8.7%

-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다방면에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가치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인체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동 조례안의 경우 최근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잦은 조례 개정('19.3.8.,4.30.,6.28.)이 있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